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9895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로 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막대한 국가 이익의 손실과 함께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한 자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